

# 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| 3,953,922,041 | 118,617,661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| 3,393,673,620 | 101,810,209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| 560,248,421   | 16,807,453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| 467,253,837   | 14,017,615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194,026,713   | 5,820,801 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273,227,124   | 8,196,814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| 92,994,584    | 2,789,838   |
| 교통사업 특별회계          | 29,488,251    | 884,648     |
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      | 2,531,297     | 75,939     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| 297,492       | 8,925       |
| 대지보상 특별회계          | 570,000       | 17,100     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         | 105           | 3          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         | 34,681,350    | 1,040,441  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    | 3,229,795     | 96,894      |
| 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 | 21,117,844    | 633,535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| 1,078,450     | 32,354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,574,99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1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